

대 법 원

제 3 부

결 정

사 건 2020모2561 관할이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재 항 고 인 재항고인
원 심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20. 7. 28.자 (춘천)2020초기1 결정

주 문

재항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재항고이유를 본다.

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(형사소송법 제403조 제1항). 그런데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,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불복할 수 없다.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·법률·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.

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21. 4. 2.

재판장 대법관 김재형

 대법관 민유숙

주 심 대법관 이동원

 대법관 노태악